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70
----------	------

제출년월일 : 2007. 5.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7669호, 제정 2005.8.4)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18호 제정 2006.2.6)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3조)
- 나.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내지 제8조)
- 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안 제9조 내지 제11조)
- 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13조)
- 마. 자원봉사보험 가입대상 규정(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입법예고(2007.2.16 ~ 2007.3.8)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5조(설치)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운영 등) ①자원봉사센터는 구가 운영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 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 사무국과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④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9조(설치)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5.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경비 및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주간)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가입) ①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실비 지급)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